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3호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하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을 포함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